

## 과징금·과태료 부과사항

1. 조치 대상 법인명	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
2. 과징금 등의 종류	과징금, 과태료
3. 과징금 등의 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징금 :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,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 및 &lt;별표9&gt; 상호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기준</li> <li>- 과태료 :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5, 제40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2조 및 &lt;별표5&gt;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, 제25조, 제28조, 제43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및 &lt;별표2&gt;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, 제28조</li> </ul>
4. 과징금 등의 원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징금 :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</li> <li>- 과태료 : 업무보고서의 거짓제출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미확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미운영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</li> </ul>
5. 과징금 등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징금 : 1,521,000,000원</li> <li>- 과태료 : 360,000,000원</li> </ul>
6. 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결정통보일 : 2019.12.09.</li> <li>- 과태료의 경우 기간내 자진납부(288,000,000원)</li> </ul>

### 기재상의 주의

주1) 상호저축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제4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공시

주2) 기타 법규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 공시